

# 배영중학교 학생 생활 규정

## 제1장 총 칙

제1조 【명칭】 이 규정은 '배영중학교 학생 생활 규정'이라 한다.

제2조 【목적】 본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 지도와 관련하여 학생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·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【적용 근거】 이 규정은「교육 기본법」제12조 제1항,「초·중등 교육법」제18조의 4(학생의 인권 보장), 제20조(교직원의 임무),「동법시행령」제8조(학교 규칙), 제18조(학생의 징계), 「전북 학생 인권 조례」에 근거한다.

## 제2장 학생 선도 위원회

### 제4조 【구성】

- ① 학생의 생활 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학생 선도위원회를 둔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 선도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 과정 운영부장, 각 학년부장, 인성 인권부장, 인성 인권부 교사로 구성하고, 인성 인권부장을 주무로 한다.

제5조 【기능】 학생 선도 위원회는 학생 생활의 모든 문제를 심의 조정하고 학생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① 학생 선도 위원회는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심의한다.
- ② 학교장은 학생 선도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해당 학생 선도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담당 교사가 기록,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.

제6조 【의결 정족수】 학생 선도 위원회는 재적의원 1/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1/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3장 학생 생활

### 제1절 교내 생활

**제7조 【기본 품행】** 학생으로서 기초 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 생활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#### 제8조 【시설 이용 및 환경】

-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.
-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,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.
- ③ 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.

#### 제9조 【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】

-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.
-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.

**제10조 【교우 관계】**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·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.

#### 제11조 【용모】

- ①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을 입으며,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.
  - 가. 교복의 기본 색상과 디자인을 변형하지 않는다.
  - 나. 남학생은 바지를 입으며,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를 선택해서 입을 수 있다.
  - 다. 여학생의 치마 길이는 무릎 위 5센티 이내로 한다.
  - 라. 바지 발목 지퍼는 허용하지 않으며, 발목 부분 여분은 5cm 이상으로 한다.
  - 마. 반바지 길이는 무릎 위 5cm 이내로 한다.
  - 바. 동절기에는 교복 위에 점퍼나 코트를 착용할 수 있다.
  - 사. 동절기에는 검정 계열, 회색 계열, 흰색의 목티를 착용할 있다.
  - 아. 여학생은 스타킹(원색 계열 색상 제외)을 착용 할수 있다.
  - 자. 동복, 하복, 간복 착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상 관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구분	내용	착용 시기	비고
동복	자켓, 셔츠(블라우스), 타이,조끼, 바지(치마)	11월1일~4월15일	
간복	블라우스, 타이, 조끼, 바지(치마)	4월16일~6월14일 9월15일~10월30일	조끼는 생략 가능
하복	상의, 하의(바지, 치마, 반바지)	6월15일~9월15일	

②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신는다.

가. 실외화는 일반적인 운동화를 신으며 학생용 단화도 허용한다.(성인용 구두 착용 금지)

나. 실내화는 허용된 범위(실내용 슬리퍼)를 신는다.

③ 가방은 학생용 가방을 사용한다.(솔더백, 크로스백, 핸드백 금지)

④ 명찰은 학생증으로 대용하며 학교에서는 목에 걸고 생활한다.

⑤ 두발은 단정하고 학생다운 머리 스타일로 한다

가. 파마와 염색(브리지, 코팅, 탈색 등 색상 변형 포함) 등의 변형을 하지 않는다.

나. 머리의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, 앞머리가 눈동자를 가리지 않도록 하고 긴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도록 권장한다.

다. 무스, 스프레이, 헤어젤 등의 헤어제품의 사용을 금한다.

⑥ 피부 보호를 위한 기초화장 이외의 성인용 화장품 사용 및 휴대를 금한다.

가. 속눈썹 부착이나 색조 화장(입술 연지 포함)을 금한다.

나. 입술 보호를 위한 무색의 립글로즈, 립밤 등을 사용할 수 있다.

다. 손톱 길이를 짧게 유지하고 매니큐어는 허용하지 않는다.

라. 교육활동 시간에는 어떠한 미용용품(거울 포함)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.

⑦ 목걸이, 반지, 팔찌, 피어싱 등의 장신구는 착용을 금지한다.

⑧ 향수 사용 및 문신(타투)를 금한다.

⑨ 시력보호용 렌즈를 제외한 미용 목적의 렌즈(써클렌즈 포함)착용은 허용하지 않는다.

⑩ 타인을 비하, 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,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 물을 착용하지 않는다

⑪ 청결을 유지하고,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.

⑫ 특기신장에 필요하거나 신체이상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⑬ 위 사항 이외에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해되는 사항을 규제할 수 있다.

**제12조 【학급 내 봉사활동】** 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① 제 행사, 조회, 종례, 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당 교사의 지시를 받아 학급에 전달하고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.

② 학급 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.

③ 학급 내 봉사 활동은 다른 학생보다 일찍 등교하여 임무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 정돈을 한 후에 하교한다.

- ④ 학급 내 봉사 활동(주변)은 실장, 부실장을 제외한 학생 전원이 학급마다 2명씩 1주일간 봉사한다. 단, 담임교사는 학생의 건강이나 특별한 사유를 고려하여 주변 활동의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**제13조 【조퇴 등】** 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결과, 외출 및 조퇴를 할 수 없다.

**제14조 【수업】**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공휴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. 단 국가 지정 주5일 휴업일은 수업 일에서 제외한다.

## 제2절 교외 생활

**제15조 【교외생활】** 학생의 교외 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 관계법이나 본교 학생 생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-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.
-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.
-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,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④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.
-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.
- ⑥ 교통 규칙,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.
- ⑦ 술, 담배,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.
- ⑧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.

**제16조 【보호자의 의무】**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(자녀)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,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.

- ① 학생(자녀)의 외출 및 귀가 시간
- ② 학생(자녀)의 교외 생활 중 교우 관계
- ③ 평소와 다른 학생(자녀)의 이상 행동

### 제3절 정보 통신

**제17조 【사이버 생활】** 예절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.
-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, 성희롱,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.
-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.
- ④ 음란·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.
-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,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.
-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.
-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.
- ⑧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.

**제18조 【통신 기기 관리】**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- ① 교내에서 휴대 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침 조회 시 수거하고 종례 시 인수 받는다.(수업 중 적발 시 1주일간 유치 후 돌려준다.)
- ② MP3, PMP는 소지 가능하나 교육 활동에 방해 요소가 있을 경우 수거하여 1주일 후에 반환조치 한다.
- ③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.
- ④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.

### 제4절 학생회

**제19조 【회원】**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. 단, 유예자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.

**제20조 【권리 및 의무】**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
**제21조 【금지 활동】**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하여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.

**제22조 【관장 사항】** 학생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학생 연구 활동
- ② 예술, 체육, 취미 활동
- ③ 각종 봉사 활동
- ④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

**제23조 【승인】**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.

**제24조 【학생회 임원】**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학생회 회장 1인, 부회장 1인으로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② 각부의 부장 1인으로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③ 학급 실장, 부실장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.

**제25조 【부서】**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.

- ① 총무부 : 제반 사업의 계획, 서무, 문서, 회계 및 기타 사항
- ② 학습부 : 면학 분위기 조성, 실내 정숙, 학력 향상, 자기 주도 학습 진행
- ③ 문화부 : 학.예술 활동 및 교양, 취미, 오락 등에 관한 사항
- ④ 도서부 : 도서 관리, 독서 활동, 문예활동, 학교 간행물 관리
- ⑤ 체육부 :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
- ⑥ 봉사부 : 자율 봉사 활동,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
- ⑦ 환경부 : 학교 내의 환경 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
- ⑧ 생활부 : 생활 습관, 생활 규정에 관한 사항

**제26조 【직무 및 선출】**

#### 1. 직무

-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가. 회장은 학생회 일체의 업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.
  - 나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다.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,관장한다.
-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
  - 가.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.
  - 나. 학생회 임원 선출에 교사의 개입을 금지한다.
  - 다. 각부 부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.

## 2. 선출

①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### 가. 회장.부회장의 선출 :

- ① 본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3학년 학생으로서 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매년 3월 중에 선출한다. 회장은 최다득표자로 하고 부회장은 차점자로 한다.
- ② 단, 회장.부회장의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대의원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할 수 있다.

### 나. 부장의 선출 :

- ① 각부 부장은 학생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의 동의를 얻은 후 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출한다.

## 제27조 【대의원회】 학생회 심의.의결 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.

### ① 구성

가. 회장, 부회장 및 각 학급의 실장과 부실장으로 구성한다.

나. 의장은 회장이 된다.

### ② 기능

가. 학생 생활의 제반 문제 제기 및 심의 의결

나.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심의

다. 기타 필요한 사항

### ③ 회의

가. 회의는 필요시 학생회장의 요구로 소집한다.

나. 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위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.

다.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.

## 제28조 【회칙 개정】 회칙에 대한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① 회칙의 개정은 대의원 1/2이상의 찬성 또는 집행 위원 1/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생활 지도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한다.

② 이 개정안은 대의원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## 제29조 【집행위원회】

① 구성 : 회장,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.

### ② 기능

가.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

나. 사업 계획

다.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

라. 기타 중요한 의안

- ③ 회의 : 집행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가진다. 다만,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학생인권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도 소집 한다.

## 제5절 학생회 지도 위원회

**제30조 【구성】** 본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인성 인권부장, 학생회 담당 교사 및 각 학년 부장, 교감으로 구성된 지도 위원회를 둔다.

**제31조 【기능】** 지도 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자율 능력과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임원 선출과 대의원회의 협의 사항 및 학생회에 관련된 활동을 지도한다.

- ①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② 조직 및 편성에 관한 사항
- ③ 예산편성,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
-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제4장 학생 지도 및 체벌

### 제1절 생활 지도

**제32조 【안전지도】** 학생에 대한 안전 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.

- ① 실험·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.
- ② 학교 시설 안전 관리에 철저히 한다.
- ③ 필요 시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.
- ④ 물놀이·등산·빙판·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.
- ⑤ 등·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(봉사 단체)로 구성된 교통 반을 운영할 수 있다.
- ⑥ 각 급 학교의 ‘현장 교육 학생 안전 관리 규칙’을 준수한다.

**제33조 【교외 생활 지도】** 학부모(단체), 유관 기관, 시민 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.

제34조 【학생 체벌】 직간접 학생 체벌은 금하며, 훈계로 잘못을 반성하게 한다.

제35조 【보호자의 책임】 학생이 교내.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,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.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 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.

## 제5장 징 계

제36조 【징계 원칙】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- ① 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.
- ② 학생 징계는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.
- ③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.

제37조 【징계의 심의 및 의결】 학생 선도 위원회는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위원 1/2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1/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8조 【학생 선도 위원회의 소집】 학생 선도 위원회는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한다.

제39조 【학생 선도 위원회의 사안 설명】 학생 선도 위원회는 담당 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, 필요 시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(학부모)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.

제40조 【재심의 부의】 학교장은 학생 선도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41조 【징계의 종류와 기간】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주의는 구두로 하고 반성문을 제출한다.
- ② 학교 내 봉사 : 5일 이내로 하고, 출석으로 처리한다.
- ③ 출석 정지 :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, 결석으로 처리한다.
- ④ 사회봉사 :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, 출석으로 처리한다.
- ⑤ 특별 교육 이수 :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. 단, 특별 교육 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⑥ 교육 환경 전환 처분 : 학교장은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의결에 따라 교

육 환경 전환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처분할 수 있다.

⑦ 장애 학생에 가한 폭력은 한 단계 위의 징계 처벌을 한다.

**제42조 【징계의 방법】**

- ① 주의 및 학교 내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인성부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.
-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.
- ③ 특별 교육 이수는 시도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시설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.
- ④ 징계 처분 사실은 학생 징계 대장에 기록·관리하며, 추수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.
- ⑤ 징계에 의한 학교 내 봉사, 사회봉사는 순수 봉사 활동과 구별하여 봉사 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- ⑥ 출석 정지가 10일 이상일 경우 전학을 권고하고, 출석정지 처분 기간(가정 학습 특별 교육 과제 조치 명시) 동안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 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.

**제43조 【징계의 세부 사항】** 징계 종류별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수업 부적응 및 방해 학생 징계(선도위원회 개최 없이 시행)

**가. 징계 매뉴얼**

구 분	메뉴얼	수업교사
저해 학생 발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업교사가 경고 및 지도</li> <li>■ 교실 뒤에 세워 놓고 수업하기</li> </ul>	수업교사
카드 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업 교사가 수업 저해 학생 카드 작성</li> </ul>	수업교사
카드 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업 교사가 교감에게 제출</li> </ul>	수업교사
누가 기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교감은 수업 저해 학생 누가 기록부 작성</li> </ul>	교감
학생 지도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하루에 2회 이상 수업 저해학생 카드 받은 학생</li> <li>■ 교사의 지시에 불응한 학생</li> <li>■ 특정 교과 시간에 지속적으로 수업을 저해한 학생</li> </ul>	
학생 지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학생 상담 실시</li> </ul>	교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9교시 자율 학습 2일간 강제 실시</li> </ul>	학년부장
학부모 상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3회 이상 학생 지도를 받은 경우 학부모 소환</li> </ul>	인성부장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학생, 학부모, 학교의 입체적 문제 해결</li> </ul>	교감

- ② 학교 내 봉사
  - 가. 학교환경 미화작업
  - 나. 교과별 특별과제 부여
  - 다. 교재.교구 정비
  - 라. 교내도서관 도서정비
- ③ 사회봉사
  - 가.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: 환경미화, 교통안내, 거리질서 유지 등
  - 나.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: 우편물 분류, 도서관 업무 보조 등
  - 다.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: 노인정, 장애 시설, 사회 복지관 등
- ④ 특별 교육 이수
  - 가.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
  - 나.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, 약물.마약.환각제.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
  - 다. 행동.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,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
  - 라.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
  - 마. 상담 자원 봉사자, 청소년 대화의 광장,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을 이수 한다.
  - 바.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,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 결석으로 처리한다.
- ⑤ 교육환경전환 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육환경전환이 될 때까지 학교 내 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는다.
- ⑥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.

**제44조 【심의 확정】** 학생 징계는 학생 선도 위원회와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.

**제45조 【징계 내용 통보】**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.

**제46조 【징계 유보】**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.

**제47조 【징계 경감】**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**제48조 【징계 해제】** 학교장은 징계 기간 만료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.

## 제 6 장 규정의 개정 방법

**제49조 【개정 방법】**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 (이하 위원회)를 구성하여 학생, 학부모,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.

**제50조 【규정개정심의위원회】** 다음과 같이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① 구성

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로 구성하고, 1인의 간사를 둔다.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·교원·학부모가 포함되도록 하고, 학생위원의 수가 40%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, 학생위원은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.

② 선출

위원회의 학생위원은 학생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생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. 위원회의 교원 위원은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. 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가정통신문을 통한 희망자로 하되, 인원이 많을 경우 참석한 학부모의 투표로 선출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 단위의 1년으로 하며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, 문헌조사를 실시하며,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요청한다. 개정된 학교생활 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,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.

**제51조 【개정안의 발의】**

① 학생은 학교생활 규정의 제정, 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.

1. 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

2. 학생회 대표(학생대의원회의 의결서 첨부)
3. 재직 교원의 과반수(교직원회의 의결서 첨부)
4. 학부모 대표(학부모회 의결서 첨부)

#### **제52조 【기타】**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.

## **부 칙**

- (1) 이 규정은 2011년 7월 13일(수) 전체 교무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- (3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1일 개정을 거쳐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(4) 이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- (5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징계 기준

구분	항	행 위 내 용	징 계					
			주의	학교 내 봉사	출석 정지	사회 봉사	특별 교육	교육 경환 전환
예 절	1	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	○	○				
	2	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	○					
	3	언행이 불손한 학생	○	○				
	4	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	○	○	○	○	○	
	5	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	○	○	○	○		
준	6	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			○	○	○	○
	7	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	○					
	8	공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 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		○	○	○	○	○
	9	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		○	○	○	○	○
	10	금지된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		○	○	○	○	
	11	인원 점검 시 대리로 대답한 학생	○					
	12	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	○	○				
	13	학교 출입 시 월장한 학생	○	○				
	14	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			○	○	○	○
	법	15	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	○	○	○	○	
16		경찰기관에 구속 석방 된 학생			○	○	○	○
17		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 고 인정된 학생			○	○	○	○
18		불온 문서를 은닉, 탐독, 제작, 게시, 또는 유포한 학생		○	○	○	○	○
19		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		○	○	○	○	○

구분	항	행 위 내 용	징 계					
			주의	학교 내 봉사	출석 정지	사회 봉사	특별 교육	교육 환경 전환
수 업	20	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	○					
	21	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	○	○				
	22	수업을 거부한 학생		○	○	○	○	
	23	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	○	○				
	24	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	○	○				
	25	부정한 휴대물(쪽지 등) 또는 책상·벽 등에 사전 기재해 놓은 내용을 보는 행위	○	○				
	26	다른 학생과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	○	○				
	27	휴대폰, 디지털 카메라, 무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을 소지,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	○					
	28	감독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	○	○				
	29	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	○	○				
	30	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행위 (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)		○	○	○		
	31	기타 감독교사가 타당하고 명백한 근거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등		○	○	○		
	32	시험을 거부한 학생		○	○	○		
	33	백지 동맹을 주동하거나 선동한 학생		○	○	○	○	○
34	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		○	○	○	○		
근 태	35	무단결석,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3회 이상한 학생	○	○				
	36	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		○	○	○		
	37	정당한 사유 없이 연(連) 1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		○	○			

구분	항	행 위 내 용	징 계					
			주의	학교 내 봉사	출석 정지	사회 봉사	특별 교육	교육 환경 전환
근 태	38	정당한 사유 없이 연(連) 15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		○	○			
	39	정당한 사유 없이 연(連) 2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		○	○			
	40	동 학년 중 결석 기간이 법정 출석일수 1/3을 초과한 학생						○
약 물	41	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	○	○	○			
	42	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			○		○	
	43	본드, 대마초,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 한 학생		○	○			
폭 력	44	흉기를 소지한 학생		○	○			
	45	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		○	○		○	○
	46	욕설을 남용하거나 폭력을 행사 한 학생	○	○				
	47	집단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도, 가담한 학생		○	○		○	○
	48	공공 시설물,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 한 학생	○	○				
	49	이유 없이 상, 하급생간에 폭력을 행한 학 생		○	○			
퇴 폐 행 위	50	교내에서 도박을 한 학생	○	○				
	51	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		○	○			
	52	학생출입 금지 된 장소에 출입 한 학생	○	○				
	53	불량서적(음란서적)불량비디오 및 녹음테이프 소지 및 시청한 학생	○	○	○			
	54	불건전한 이성 교재 등으로 풍기를 문 란하게 한 학생	○	○				
	55	부녀자를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	○	○	○			
금품	56	금품을 절취, 갈취, 사취, 강탈한 학생		○	○		○	○

구분	항	행 위 내 용	징 계					
			주의	학교 내 봉사	출석 정지	사회 봉사	특별 교육	교육 환경 전환
집   단	57	불량 씨클을 조직 운영 및 가입한 학생		○	○	○	○	○
	58	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,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	○	○				
	59	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		○	○	○	○	○
	60	동맹 휴학을 선동,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		○	○	○	○	○
	61	동일 학년에 3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처벌을 한다.		○	○	○	○	○
기 타	62	징계 기준 외의 사안은 선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 한다.	○	○	○	○	○	○